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10호

2021.9.1.(수)



서울특별시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492호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	2
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92호

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

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(중대본회의 ' 21.8.24.)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적용기간: ' 21. 9. 1.(수) 0시 ~ 9. 5.(일) 24:00시까지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이 적용되는 목욕장업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집합제한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 -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5. 목욕장업 방역수칙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	▲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	▲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	▲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▲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22시~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	▲22시~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
▲수면실 이용제한없음	▲수면실 이용금지	▲수면실 이용금지	▲수면실 이용금지
▲정기이용권(달 목욕권) 제한 없음	▲정기이용권(달 목욕권) 제한 없음	▲정기이용권(달 목욕권) 제한 없음	▲정기이용권(달 목욕권) 발급 금지
▲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	▲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	▲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	▲종사자 전원 PCR 검사(2주 1회) (' 21.9.5까지 서울시 고시 제475 호 선제검사 행정명령 의거 추진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-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 ■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 · 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■세신사는 탕 안,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	■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■탕 안,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- 탕 안,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■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췌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■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■ 욕조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안내	
	⑧ 환기하기 ■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*공조기, 환풍기, 창문 등	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■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, 사적대화 금지,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	
	⑪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	
추가 수칙	① 대화자제 ■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■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	■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공용물품 사용 자제	
	■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(1회용컵 비치) ■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■ 드라이어,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	■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(1회용컵 사용) ■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■ 드라이어,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
	③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	
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④ 종사자 휴게실 관리	
	■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■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	

6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9월 1일 0시부터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